

EC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홍 명 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제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I. 들어가며

수직적 구조하에서의 거래제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 반독점법에 기원한다. 1세기를 넘는 동 법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이에 대한 규제는 하나의 범주로서 자리잡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고유한 법리도 발전되어 왔다. EC 경쟁법에서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의 형성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발전된 법리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양 법체계의 상이, 특히 독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차이는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와 규제의 내용을 미국에서 발달된 법리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EC 경쟁법상 이러한 규제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II.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와 유형

1. 수직적 거래제한의 의의

(1) 수직적 거래제한에 있어서 수직성

수직적(vertical) 거래제한에 있어서 수직성은 다른 유형의 거래제한, 즉 수평적(horizontal) 거래제한이나 혼합적(mixed) 거래제한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징표이다. 그 의미는 전후방으로 인접한 시장에서의 거래제한을 말하는데, 이는 동일시장에서의 거래제한을 의미하는 수평적 거래제한이나 전후방의 관련성이 없는 시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제한인 혼합적 거래제한과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수직적 거래제한과 수평적 거래제한은 개념적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실 거래에서 양자의 차이가 언제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¹⁾ 때로는 양자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례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예는 제조업자가 배급업자에게 재판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자신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인데,²⁾ 결국 배급업자에 대한 제한을 경쟁자의 입장에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구조 안에서 상류시장에 있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수평적 거래제한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수직적 거래제한으로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수직적 거래제한이 수평적 거래제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1) 이러한 불명확성이 최초로 노정된 것은 U.S. v. E. C. Knight, 156 U.S. 1(1895)인데, 법원은 설탕 제조가 설탕 거래에 선행한다고 할지라도 설탕 거래의 일부는 아니므로 제조에 관한 합의가 셔먼법 제1조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2nd ed., Matthew Bender, 1994, 81면 참조.

2) 위의 책, 172면.

들어 소매업자들이 자신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들의 수직적 가격제한(재판매가격유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제조업자들이 제조 단계에서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직적 가격고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수직적 가격고정에 당연위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더 확고하게 당연위법의 원칙과 결합되어 있는 수평적 가격고정과 결부시키려는 의도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의 이론적인 문제 제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검증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³⁾ 비용 분석에 의한 추론은 이러한 의문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부정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⁴⁾

(2)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1) 상표내(intrabrand) 거래제한과 상표간(interbrand) 거래제한

수직적 거래제한은 상표내 거래제한과 상표간 거래제한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분류는 무엇보다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표내에서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표간에 발생한다.

상표내 거래제한은 다시 수직적 가격제한을 의미하는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와 비가격제한(non price restraints)으로, 상표간 거래제한은 끼워팔기(tying)와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로 나뉜다.

2) 수직적 가격제한과 수직적 비가격제한

전술한 것처럼 가격제한과 비가격제한은 상표내에서의 경쟁제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거래제한의 유형으로서, 유통과정의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위 사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구속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유통과정상으로 이어지는 1차계약(Erstvertrag)과 2차계약(Zweitvertrag)이 있는 경우에, 상위의 1차계약에서 2차계약의 내용을 구속하는 것이 된다.⁵⁾ 이러한 구속이 직접적으로 가격에 관련되는 경우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나뉘어 지는데, 특히 지역이나 고객 등에 관련한 제한 등이 후자에 해당

3) 위의 책, 159-160면.

4) 위의 책, 같은 면.

5) Fritz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6. Aufl., C. F. Müller, 1999, 253-225면.

한다. 즉 비가격제한은 본질적으로 가격제한의 여개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제한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독점법상 양자에 대한 규범적인 효과에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구별이 갖는 현실적인 중요성이 있다.

3) 끼워팔기와 배타적 거래

상표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제한 유형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끼워팔기와 배타적 거래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를 상표간 경쟁제한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위치시키지만,⁶⁾ 두 거래제한 사이에 행태상의 유사성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우선 끼워팔기는 일정한 상품의 판매에 다른 상품의 판매를 강제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즉, 주상품 시장과 부가상품 시장이 관련되는데, 지배력을 갖고 있는 주상품의 거래에 부가상품을 강제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주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부가상품 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 경쟁법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⁷⁾

배타적 거래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구매하거나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은 배타적인 거래를 통하여 당해 시장이 경직적인 구조로 고착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⁸⁾

(3)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범적 평가

1) 당연위법(per se illegal)과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의 적용

전술한 수직적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들에 대한 미국 반독점법의 적용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반독점법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당연위법과 합리성 원칙의 법리가 이들 유형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당연위법의 법리는 U.S. v. Container Corp. of America 사건에서⁹⁾ 제시된 것으로서, 일

6) Phillip Areeda & Louis Kaplow, Antitrust Analy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8, 626면.

7)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West Group, 1999, 415면 이하.

8) 위의 책, 430면 이하.

9) 393 U.S. 333 (1969).

정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일련의 심사과정이 불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¹⁰⁾ 결국 일정한 행위에 전형적으로 결합하는 반경쟁성의 정도, 그리고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반독점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유형별 고찰

재판매가격유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직적 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경성카르텔로 분류되는 수평적 가격고정(price fixing)에 대응하는 것이다. 수직적 가격제한을 당연위법으로 보는 미국 판례의 기초는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완화되는 경향도 있는데, 최고가격 지정 형식의 수직적 가격제한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State Oil Co. v. Khan 사건은¹¹⁾ 주목할 만한 변화에 해당한다.

수직적 비가격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Sylvania 사건인데,¹²⁾ 동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직적 비가격제한이 상표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상표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으며, 이를 비교형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³⁾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독점력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증에 기초하여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¹⁴⁾ 그러나 끼워팔기의 친경쟁적 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미국 법원은 당연위법 적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¹⁵⁾ 당연위법

10) 특히 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심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사이의 형량을 통해서, 당연위법의 판단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Thurgood Marshall 대법관의 견해에 관하여, 위의 판결집, 341면 참조.

11) 522 U.S. 3 (1997).

12) 433 U.S. 36 (1977).

13) 위의 판결집, 55면 참조. 한편 동 판결의 의의를 시카고 학파의 모델이 지도적인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에, Herbert Hovenkamp, "Antitrust Policy after Chicago", Michigan L. R. vol. 84, 1985, 215-218면 참조.

14) 끼워팔기에 있어서 독점력 이전 이론을 긍정하는 대표적 논증으로서, Lawrence Sullivan & Ann Jones, "Monopoly Conduct, Especially Leveraging Power from One Product or Market to Another", Thomas Jorde & David Teece ed.,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75면 이하 참조.

15) 이 요건은 다음의 5가지로 집약되는데, ① 두 상품의 존재, ② 판매자에 의한 끼워팔기의 강제, ③ 강제가 가능할 수 있는 주상품 시장에서 판매자의 충분한 경제력의 보유, ④ 부가상품 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효과, ⑤ 부가상

적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

배타적 거래의 경쟁제한성은 이른바 봉쇄효과(foreclosure)로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배타적 거래를 통하여 시장이 장기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근거하지만, 수직적 관련성 하에서 경쟁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대비되는 두 효과를 형량하여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⁶⁾

Ⅲ. EC 경쟁법상 수직적 거래제한

1. 개관

EC 경쟁법에 있어서도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우선 거래제한에 관한 합의를 규제하고 있는 제81조는 수직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¹⁷⁾ 이는 Italy v. EEC Council and Commission 사건에서¹⁸⁾ 유럽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제81조는 제1항의 금지요건과 제3항의 허용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별로 이들 요건의 실질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수직적 거래제한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 조약 제82조가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품 시장에서의 미미하지 않은 거래량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Herbert Hovenkamp, 주 7)의 책, 392면, 16) 위의 책, 430-439면.

17) 수직적 합의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카르텔 규제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Volker Emmerich, Fälle zum Wettbewerbsrecht 4. Aufl., C. H. Beck, 2000, 37-38면 참조.

18) Case 32/65 (1966) CMLR 39 (12).

별로 EC 경쟁법상의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상표내 거래제한

수직적 가격제한과 수직적 비가격제한에 대한 규제는 카르텔을 규제하는 EC조약 제81조에서 수평적 거래제한과 마찬가지로 규제된다. 따라서 EC조약 제81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¹⁹⁾ 수직적 가격구속이나 비가격구속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²⁰⁾

법적용의 측면에서 가격제한과 비가격제한은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격에 대한 제한만을 당연위법으로 다루어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 미국 법원의 태도에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적 태도와는 달리 유럽 법원이 비가격제한을 당연위법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가격제한을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룬 사례로서 Campari 사건이²¹⁾ 대표적인데, 여기서 위원회는 품질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정당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제8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허가취득자에 대한 공급원의 제한이 반경쟁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²²⁾ 한편 제81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괄예외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수직적 가격제한이나 비가격제한은 원칙적으로 1999년 개정에 의한 규칙 제2790/99호에 의해서도 일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격이나 비가격제한의 당사자가 단지 두 사업자인 경우나 다수의 상인들과 체결한 일련의 병행계약(Parallelvertrag)의 경우에는 제17호 규칙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경쟁성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제한이 상표내 경쟁제한의 효과를 낳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²³⁾ 한편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에서와 같은 출판물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EC 경쟁법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²⁴⁾

19) Christian Calliess & Matthias Ruffert hrsg., Kommentar zu EU-Vertrag und EG-Vertrag 2. Aufl., Luchterhand, 2002, 1046면 이하(Wolfgang Weipß 집필부분).

20) Fritz Rittner, 주 5)의 책, 256면.

21) (1978) 2 CMLR 397.

22) D. M. Raybould, Comperative Law of Monopolies, Graham & Trotman, 1989, 243면.

23) Fritz Rittner, 주 5)의 책, 257면.

3. 상표간 거래제한

(1) 배타적 거래

배타적 거래는 수직적 가격제한이나 비가격제한과 마찬가지로 EC조약 제81조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 거래에 대해서는 EC 위원회의 실무상 일괄예외(block exemption, Gruppenfreistellung)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한도에서 제81조에 의한 규제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일괄예외의 근거는 제81조제3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요건은 누적적으로 ① 상품의 생산 또는 상품분배의 개선이나, 기술적·경제적 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할 것, ② 발생한 이익에 소비자의 적절한 참여가 보장될 것, ③ 그러한 목적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제한에 그칠 것, ④ 당해 상품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경쟁이 배제되지 않을 것 등이며, 규칙 제17호의 제9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EC조약 제81조제3항에 해당하는 예외를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용요건과 일괄예외제도를 둔 것은, 법적용의 명확성을 기하여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에 주된 이유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규제대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정한 행위에 반경쟁적인 효과가 전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판단과도 관련된다.²⁴⁾

수직적 거래제한에서 이상의 일괄예외는 배타적 거래에 집중되었는데,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연혁을 대략적으로 보면, 규칙 제67/67호에 의하여 배타적 거래에 관한 단일한 일괄예외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배타적 판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 제1983/83호와 배타적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 제1984/83호로 분화되었다. 특히 배타적 구매계약에 관한 규칙은 맥주공급계약과 주유소계약에 관한 특별규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약유형과 함께 특별한 분야에서 계약의 같이 일괄예외로서 지정하는 것은 규제의 혼선을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예외지정이 반경쟁적 고려를 넘어서 당사자 자율적 조정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고권적 개입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²⁵⁾

24) 위의 책, 259면 참조.

25) 위의 책, 228면 이하 및 Christian Calliess & Matthias Ruffert hrsg., 주 19)의 책, 1053면 참조.

26) Fritz Rittner, 주 5)의 책, 265면 이하. 한편 일정한 배타적 거래의 일괄면제에 대한 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이에 관한 논의로서, Klaus P. Rohardt, "Vertical Beschränkungen des Wettbewerbs in Europa: Follow-up zum Grünbuch 1996", WuW, 1998, 1050면 참조.

이러한 혼선의 시정으로서 규칙 제2790/99호를 통하여 맥주공급계약과 주유소계약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규율은 폐지되었고, 배타적 판매계약과 구매계약, 나아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괄하는 단일한 일괄예외 지정으로 전환되었으며, 규정 형식도 허용되는 계약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white list 방식 대신에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는 기초하에 금지되는 것을 소극적으로(black list)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²⁷⁾ 이후 규칙 제1400/2002호로 변경되었는데, 규칙 제1400/2002호는 제조업자와 거래하는 판매상의 상업적 자유를 극대화하고 제조업자, 특히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으로 부과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제조업자와 판매상 사이에 거래상지위의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여전히 판매상은 거래상의 충분한 자유를 가진 독립적 경제주체가 아닌 유사 대리상(quasi-agent)과 같은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유보적이다.²⁸⁾

(2) 끼워팔기

계약으로서 끼워팔기에 관한 규제는 다른 수직적 거래제한 유형처럼 EC조약 제81조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제한의 불문의 구성요건으로 이해되는 경쟁제한의 감지가능성(Spürbarkeit)이²⁹⁾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규제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⁰⁾

한편 끼워팔기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초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행위에 자체체 모야진다. 전술한 것처럼, 끼워팔기의 반경쟁성은 주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부가상품 시장에 전이하려는 것에 있으며, 이는 남용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³¹⁾ 대표적인 사례로는 Deutsche Bahn와 영세 철도사업자인 GVG 그리고 Swedish State Railway 간의 사건이다. GVG와 Swedish State Railway는 Deutsche Bahn에게 운행에 불가결한 엔진의 임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Deutsche Bahn은 엔진의 임대와 자신의 일정한 직원의 고용을 결합

27) D. G. Goyder, EC Competition Law 4. ed., Oxford Univ. Press, 2003, 183면 이하, 543-544면.

28) 위의 책, 544면.

29) 불문의 요건으로서 감지가능성(spürbarkeit)은 실무상 중요하지 않은 경쟁제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Gerhard Wiedemann hrsg., Handbuch des Kartellrechts, §7, C. H. Beck, 1999, 147면 이하(Kurt Stockmann 집필부분 참조).

30) Fritz Rittner, 주 5)의 책, 268면.

31) D. G. Goyder, 주 27)의 책, 298면 이하.

시켰다. 위원회는 Deutsche Bahn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³²⁾ 한편 끼워팔기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규제하기 위하여 시장의 확정과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은 당연히 전제가 된다.

■ 참고문헌

- Areeda, P. & Kaplow, L., Antitrust Analysi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8
- Emmerich, V., Fälle zum Wettbewerbsrecht 4. Aufl., C. H. Beck, 2000
- Goyder, D. G., EC Competition Law 4. ed., Oxford Univ. Press, 2003
- Hovenkamp, H., Federal Antitrust Policy -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West Group, 1999, "Antitrust Policy after Chicago", Michigan L. R. vol. 84, 1985
- Raybould, D. M., Comperative Law of Monopolies, Graham & Trotman, 1989
- Rittner, F., Wettbewerbs-und Kartellrecht 6. Aufl., C. F. Müller, 1999
- Rohardt, K. P., "Vertical Beschränkungen des Wettbewerbs in Europa: Follow-up zum Grünbuch 1996", WuW, 1998
- Sullivan, E. T. & Harrison, J. L.,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 2nd ed., Matthew Bender, 1994
- Sullivan, L. & Jones, A., "Monopoly Conduct, Especially Leveraging Power from One Product or Market to Another", Thomas Jorde & David Teece ed.,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Wiedemann, G. hrsg., Handbuch des Kartellrechts, § 7, C. H. Beck, 1999

32) (1998) 5 CLMR 142.